행정쟁송법

【문제 1】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과 관련한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50점)

<사례 1>
근로자 甲은 A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A청장')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A청장은 "甲이 참여하는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비 지원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이하 '<처분사유1>')"는 사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의 계속 중 A청장은 거부처분 사유로 기존의 <처분사유1> 이외에 "甲이 제출한 훈련비용 지원서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유효한 신청서로 볼 수 없다(이하 '<처분사유2>')"라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였다. 관할 법원은 甲에게 <처분사유2>는 기존 <처분사유1>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항이지만 처분사유의 추가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甲은 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의도로 처분사유의 추가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甲의 동의에 따라 처분사유의 추가를 허용하였고, 두 가지 처분사유를 종합적으로 심리한 결과 甲의 소송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례 2>
근로자 乙은 B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B청장')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그 후 B청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 권한을 소속 담당부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한편, 지원금 수급 현황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담당부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환수처분을 자신의 명의로 乙에게 발령하였고, 乙은 이를 반환하였다. 그런데 乙은 지원금의 반환 후 위 환수처분에 발령 주체 상의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물음 1) 甲의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후 A청장은 <처분사유2>는 <처분사유1>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유임에 착안하여 이전의 甲의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처분사유2>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甲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25점)

물음 2) 乙은 환수처분의 발령 주체 상의 하자를 이유로, 환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담당부서장이 환수한 지원금을 다시 반환받고자 한다. ⅰ) 乙이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송유형과 그 피고, ⅱ) 해당 소송의 인용판결을 통하여 乙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 (25점)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제 2】 개업노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甲은 2024. 3.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노동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하다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A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24. 8. 26. 甲에게 6월의 직무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다음 날 그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2024. 9. 30. 6월의 직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6월의 직무정지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11. 4. "A가 甲에 대하여 한 6월의 직무정지처분을 3월의 직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일부인용의 이행재결을 하였으며, 2024. 11. 18. 그 재결서 정본이 甲에게 도달하였다. A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24. 11. 25. 甲에게 "6월의 직무정지처분을 3월의 직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후속 변경처분을 하였으나, 甲은 이 또한 과도한 제재처분이라면서 2024. 11. 25.자 3월의 직무정지처분을 대상으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24. 12. 10.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그리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 (25점)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문제 3】 A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A청장’)은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사 지하 1층에 편의점을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청사 내 편의시설(편의점)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다. 입찰 결과 甲이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A청장은 2022. 12. 20. 甲과 계약기간은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2년간), 연 사용료 1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사 편의점 운영권 위탁계약(이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편의점 운영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었다. 그 후 甲은 편의점을 1년 이상 운영하면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A청장은 2024. 2. 29.「국유재산법」의 규정을 근거로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였다. 甲은 위탁운영계약 해지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소송상 다투고자 한다. 甲이 제기하여야 하는 소송을 설명하시오. (단, 위탁운영계약 체결 관련 사항은 A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25점)

◆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